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
----------	----

제출연월일 : 2005. 11. 29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진사주공아파트 입주로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대한 행정리 및 반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동마을의 행정리명을 변경(안 별표)

○ 사남면 유천리 ⇒ 사남면 월성리

나. 월성리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

○ 4개리 13개반 ⇒ 8개리 23개반

- 신설 리 및 반 ⇒ 월성5리 2개반, 월성6리 3개반, 월성7리 3개반

- 조정:유천리 1개리 2개반⇒월성리 1개리 2개반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10,240천원 증액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5. 9. 7 ~ 9. 28)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이장정수 조례

제1조중 “ 지방자치법” 을 “ 「지방자치법」 ” 으로 한다.

별표중 사남면 유천리 정원란 “3” 을 “2” 로, 관할구역란의 “조동” 을 삭제하고, 같은면 월성리의 정원란 “4” 를 “8” 로, 관할구역란의 월성3리 다음에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를 삽입하며, 같은란 곡성 다음에 “조동” 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名稱과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名稱과區域은중전에의하고이를變更하거나地方自治團體를廢置·分曄할때에는法律로써정하되,市·郡 및自治區의管轄區域境界變更은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②第1項의규정에의하여地方自治團體를廢置·分曄하거나그名稱또는區域을變更할때에는관계地方自治團體의議會(이하"地方議會"라한다)의의견을들어야한다.다만,주민투표법제8조의規定에의하여住民投票를실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1999.8.31,2004.1.29>

③自治區가아닌區와邑·面·洞의名稱과區域은중전에의하고,이를廢置·分曄할때에는行政自治部長官의승인을얻어당해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정한다.다만,명칭과구역의변경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고,그결과를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에게보고하여야한다.<개정1999.8.31,2005.3.24>

④리의區域은自然의村落을기준으로하되,그名稱과區域은중전에의하고이를變更하거나廢置·分曄할때에는당해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정한다

⑤洞·리에있어서는行政能率과住民便宜를위하여당해地方自治團體의條例가정하는바에의하여하나의洞·리를2개이상의洞·리로운영하거나2개이상의洞·리를하나의洞·리로운영하는등行政運營上洞·리(이하"行政洞·리"라한다)를따로둘수있다.

⑥第5項의行政洞·리에당해地方自治團體의條例가정하는바에의하여下部組織을둘수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이장의임명) ①법제4조제5항의규정에의한읍·면의행정리에는이장을둔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이장은당해주민의신망이두터운자중에서당해지방자치단체의규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읍장·면장이임명한다.

③읍장·면장이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장을임명한때에는이를당해시장또는군수에게보고하여야한다.<개정1994.7.6>